

# “설 연휴 해외여행 시 ‘홍역·덴기열’ 등 감염병 주의하세요”

### 말라리아 여행지역 방문 전 예방약 미리 처방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백신 접종 권고 방역 당국, 설 연휴 비상방역 체계 연장 운영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맞이하는 첫 설 연휴를 앞두고, 홍역과 덴기열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직전년(152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294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별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덴기열은 지난해 92개국에서 600만 명 이상이 보고돼 직전년(410만여

명)에 비해 약 58% 증가했다. 덴기열은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덴기출혈열, 덴기쇼크증후군 등 중증 덴기열로 진행되며, 치사율이 높아지므로 더욱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라리아의 경우 2022년 기준, 전 세계 85개국에서 약 2억4900만건이 발생했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될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및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

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하는 게 좋다. 최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동안 국내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8명, 올해 5명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게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방역 당국은 설 연휴 기간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거나, 조리 후 장시

간 상온 보관 등 식품 관리 소홀로 인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전국 209개 표본 감시기관 신고결과, 동기간 과거 5년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2월중 유행의 정점을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며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해외여행 시에는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돼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위생 상태가 불

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임을 고려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를 연장 운영한다. 지역별 질병정황은 “국민들께서는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귀국 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 시 즉시 감염병콜센터(1339)로 연락해 감염병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친구들과 졸업 추억 남겨요’ 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에서 열린 학우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 미성년자 성폭행·절도...2심서 형량 ↑

귀가 중인 미성년자를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까지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제주지방법원 2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서 돈을 강취하고 12시간 넘게 감금했

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생 잊히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으로 귀가하는 B양을 따라다니다 흥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음날 B양을 흥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다시 성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또 B양의 부모에게 B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4만원을 서귀포시에 사는 옛 애인을 살해하려 갈 때 택시비로 판단, 살인에 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수권기자

## 클럽 복층 붕괴로 34명 사상케 한 운영자들 2심도 징역형 집유

###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4명(2명 사망·32명 부상)을 낸 혐의를 받는 클럽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2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클럽 업주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클럽 공동 사업자였던 B(42·여)씨의 항소도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동 운영자 C(47)·D(49)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클럽을 개업·증축해 운영하다 2016년 1월 A씨 등에게 넘긴 전 운영자 E(47)·F(54)씨에게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8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 정기점검을 담당했던 안전 관리자 2명은 행정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사실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또 2차 증축 공사가 대규모 이뤄지고 용도 변경된 점, 시간적 간 등으로 미뤄 1차 공사와 붕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 신고와 설계도 없이 부적절한 재료(두께 미달)와 불안정한 용접으로 운영 중인 클럽 내부를 임의로 증축하고, 증축한 곳에 손님들이 자유롭게 올라가 춤출 수 있는데도 고정·적재 하중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검토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2019년 7월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4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클럽 원층 복층 16.82㎡가 부실 증축돼 자체 천공과 찢어짐이 발생했고, 사고 당일 손님들이 복층에서 춤을 추거나 뛰면서 지지대 용접 부위가 끊어져 구조물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이들은 복층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단 1차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조례상 출입 허용 인원(349명)을 넘긴 393명을 출입시켰다. 또 3년 6개월 동안 종업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 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



라 증가한 외국인 손님들을 복층으로 안내했고, 많은 인원이 춤을 추거나 뛰는 행위를 제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비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클럽은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운영했다. 이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행진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회장 직위를 잃었다. 김희연기자

##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에 항소 검토...검찰 “견해차 커”

### “항소를 전제한 건 아니지만 면밀히 살필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후 법조계와 재계가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재·지쿠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장 제출이 가능한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지난 5일 선고가 이루어져 원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 까지지만, 이날이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연장됐다. 재판에 담당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항소를 전제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1심 판단과 견해 차이가 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 검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논리에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참고 바닥에 숨겨진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내린

판단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합병과 승계라는 사실관계에 대해 “승계 작업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 사실관계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 아닌가 싶다”며 “주장을 배척한 경우를 충분히 확인해보고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심의 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것이 무리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항소하지 않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지일 수도 있다. 시민단체도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합병 직후부터 이를 비판해온 참여연대 등은 선고 후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엄벌하여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재계는 이 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등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은 만큼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사와 재판으로 장기간 기업 경영에 집중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이 회장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5년 5-9월 제일모직의 삼성

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 호재를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공시를 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펙스 투자 주식 재평가 등을 통해 자산을 과다 계산한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106번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주장을 들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법원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판단이라는 변호인 주장을 인용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의결권을 확보하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취지의 승계작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진 것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더해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의 실마리가 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이슬비기자